

예산총칙

제1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·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	8,203,464,382	246,103,931
일반회계		6,761,013,497	202,830,405
특별회계		1,442,450,885	43,273,527
공 기 업 특 별 회 계	공 기 업 특 별 회 계	335,534,102	10,066,023
	① 상 수 도 사 업	148,141,141	4,444,234
	② 하 수 도 사 업	187,392,961	5,621,789
	기 타 특 별 회 계	1,106,916,783	33,207,503
	① 의 료 급 여 기 금	428,439,035	12,853,171
	② 수 질 개 선	2,850,942	85,528
	③ 풍 영 정 천 유 지 용 수 공 급 사 업	202,590	6,078
	④ 도 시 개 발	184,399	5,532
	⑤ 하 남 3 지 구 도 시 개 발	6,700,287	201,009
	⑥ 택 지 개 발 사 업	221,538	6,646
	⑦ 교 통 사 업	27,924,248	837,727
	⑧ 광 역 교 통 시 설	16,281,048	488,431
	⑨ 학 교 용 지 부 담 금	9,532,067	285,962
	⑩ 산 업 단 지	4,241,631	127,249
	⑪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	65,964,138	1,978,924
	⑫ 도 시 철 도 사 업	323,439,490	9,703,185
	⑬ 소 방	220,935,370	6,628,061

제2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“세입·세출예산”과 같다.

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“해당 없음”

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“계속비사업(변경)조서”와 같다.

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“명시이월사업조서”와 같다.

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“2,602,484천원”으로 한다.

제7조 일반 및 특별회계(공기업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발행액은“417,400,000천원”으로 한다.

지방채차입한도액(기본한도)은“174,900,000천원”으로 한다.

제8조「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」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간 또는 타 비목에서 이용할 수 있다.

제9조 금회 추경 이후에 연말까지 내시되는 국고보조금,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(이월 포함)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.